

# 파주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

## 1. 사업수행능력 평가

세부평가 항목	배점	세 부 평 가 방 법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가. 참여기술인	4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- 책임기술인	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수행한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100조제1항에 해당하는 안전점검(해당 분야) 수행실적(건수)</li> </ul> <table border="1"> <tr> <td>구분</td> <td>14건 이상</td> <td>12건 이상</td> <td>10건 이상</td> <td>8건 이상</td> <td>8건 미만</td> </tr> <tr> <td>점수</td> <td>5</td> <td>4.5</td> <td>4</td> <td>3.5</td> <td>3</td> </tr> </table>	구분	14건 이상	12건 이상	10건 이상	8건 이상	8건 미만	점수	5	4.5	4	3.5	3																
구분	14건 이상	12건 이상	10건 이상	8건 이상	8건 미만																									
점수	5	4.5	4	3.5	3																									
- 보유기술인	4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평가점수가 40점을 초과하는 경우 40점으로 하고, 4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</li> <li>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에 직무분야에 한함(중복 불인정)</li> </ul> <table border="1"> <tr> <td>구분</td> <td>특급기술자</td> <td>고급기술자</td> <td>중급기술자</td> <td>초급기술자</td> </tr> <tr> <td>점수</td> <td>4 X 인원</td> <td>3 X 인원</td> <td>2 X 인원</td> <td>1 X 인원</td> </tr> </table>	구분	특급기술자	고급기술자	중급기술자	초급기술자	점수	4 X 인원	3 X 인원	2 X 인원	1 X 인원																		
구분	특급기술자	고급기술자	중급기술자	초급기술자																										
점수	4 X 인원	3 X 인원	2 X 인원	1 X 인원																										
나. 유사용역 수행실적	3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- 건축공사장	2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</li> <li>※ 최근 5년간 실적당 2점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			
- 건축물	1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건축물 안전점검 수행실적</li> <li>※ 최근 5년간 실적당 1점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다. 점검·진단 평가결과	1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- 시정·부실처분	1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」 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·진단 평가 결과를 처분 받은 경우 건당 시정처분은 0.3점 부실처분은 0.7점 감점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라. 신용도	1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- 재정상태 건실도	1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</li> </ul> <table border="1"> <tr> <td>점수</td> <td>회사채</td> <td>기업어음</td> <td>기업신용</td> </tr> <tr> <td>10</td> <td>A- 이상</td> <td>A2- 이상</td> <td>A- 이상</td> </tr> <tr> <td>8</td> <td>BBB- 이상</td> <td>A3- 이상</td> <td>BBB- 이상</td> </tr> <tr> <td>6</td> <td>BB- 이상</td> <td>B0 이상</td> <td>BB- 이상</td> </tr> <tr> <td>4</td> <td>B- 이상</td> <td>B- 이상</td> <td>B- 이상</td> </tr> <tr> <td>2</td> <td>CCC+ 이하</td> <td>C 이하</td> <td>CCC+ 이하</td> </tr> <tr> <td>0</td> <td colspan="3">미제출</td> </tr> </table>	점수	회사채	기업어음	기업신용	10	A- 이상	A2- 이상	A- 이상	8	BBB- 이상	A3- 이상	BBB- 이상	6	BB- 이상	B0 이상	BB- 이상	4	B- 이상	B- 이상	B- 이상	2	CCC+ 이하	C 이하	CCC+ 이하	0	미제출		
점수	회사채	기업어음	기업신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
10	A- 이상	A2- 이상	A-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
8	BBB- 이상	A3- 이상	BBB-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
6	BB- 이상	B0 이상	BB-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
4	B- 이상	B- 이상	B-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
2	CCC+ 이하	C 이하	CCC+ 이하																											
0	미제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## 2. 수행가격 평가

세부평가 항목	배점	세 부 평 가 방 법
○ 제안가격의 적정성	100	
- 제안평균 가격 대비 제안가격	100	$\text{평가점수} = 100 \times \left\{ 1 - 2 \times \left( \frac{\text{제안가격}}{\text{제안평균가격}} - \frac{95}{100} \right) \right\}$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,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를 산정</li> <li>제안 평균가격 : (각 제안업체의 제안가격 합계)/(제안자 수)</li> <li>제안가격이 제안 평균가격의 100분의 95 이하인 경우의 가격평점은 만점으로 평가한다.</li> <li>가격평점이 배점의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에는 가격평점을 배점의 100분의 60으로 평가한다.</li> </ul>

## 3. 최종평가

평가항목	기준	심사방법
수행능력	60점	평가점수 × 60%
수행가격	40점	평가점수 × 40%
합 계	100점	

## 4. 일반사항

가. 이 기준은 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」 제100조의2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 기관의 지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적용한다. 다만, 용역의 특성에 따라 공고를 통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나.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와 예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거나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, 이견이 있는 경우 파주시의 의견에 따른다.

다.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지정공고일 현재로 하며,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후, 소수점 둘째자리까지만 적용한다.

- 라.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.
- 마.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(증빙서류 포함) 내용 등은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,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,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하며, 수행기관의 귀책 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.
- 바. 수행기관 지정은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와 제안가격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한 기관으로 지정하며, 동점인 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수행기관을 지정한다.
  - 1) 제안가격이 낮은 수행기관
  - 2) 발주청 추천
- 사. 참여기술인이 사망·질병·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취소(해지) 또는 발주청(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·허가기관의 장)의 승인을 받은 후 동등 이상의 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.